

#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
##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의결주문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의 소송비용 납부와 관련하여, 민원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매체를 신설하는데 따른 이용수수료 체계를 정비함

### 3. 주요내용
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매체별로 그 이용수수료 상한을 달리 정함(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)

### 4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 중 “1000분의 35를 곱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용카드·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: 1000분의 35
2.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: 1000분의 80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1조(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,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<u>1000분의 35</u>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41조(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구</u> <u>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신용카드 · 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: 1000분의 35</u></p> <p>2. <u>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: 1000분의 80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711